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2015. 12.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2015. 12.

집필진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자 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 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이 연구는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 대안 등은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집필진의 의견입니다.

제 출 문

금융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금융개혁 자문단 세제분과의
용역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 목 차 -

I. 서론	1
II. 금융자산 과세체계	4
1. 금융자산 과세현황	4
2. 금융자산 소득과세	5
3. 금융자산 거래과세	17
4. 해외사례	23
III.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25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52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56
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59
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59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62
IV. 개선방안	66
1. 기본 원칙	66
1단계: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67
2단계: 금융소득 개념 도입	77
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79

- 표 목 차 -

<표 II-1> 현행 금융자산 소득과세 현황	7
<표 II-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1
<표 II-3> 주식양도소득 신고현황	12
<표 II-4> 증권거래세 부과 현황	19
<표 II-5> 납세자 특성별 소득세율(2015년 기준)	26
<표 II-6> 미국의 과생상품 과세제도	27
<표 II-7> 2009년 과세체계 변화비교	31
<표 II-8> 일본의 이자과세제도	32
<표 II-9> 일본의 배당과세제도	32
<표 II-10> 일본의 금융상품 손익통산의 범위	34
<표 II-11> 독일의 금융상품소득과세	37
<표 II-12> 과세구간별 자본이득세 세율(개인과세)	41
<표 II-13> 단계적 공제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대상	42
<표 II-14> 일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변천	45
<표 II-15>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주식거래의 이동	49
<표 III-1> 상품별·투자방식별 과세체계	65
<표 IV-1> 주요 외국의 증권에 대한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71
<표 IV-2>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국가의 세율	84
<표 부록-1> 금융상품 비과세 등 조세지원	87

- 그림 목 차 -

<그림 II-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9
<그림 II-2> 금융거래세 도입 전후 채권현물 거래량 추이	49

<요 약>

I. 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과세 차별이 존재하게 됨.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 금융자산 과세체계

1. 금융자산 과세현황

-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 금융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도록 함.
 - 또한,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보유·처분거래를 뜻함.
- 금융자산과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와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ability to pay)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음.
 -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는 거래시스템 등 사회의 편익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거래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세와 인지세가 해당됨.

2. 금융자산 소득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실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되었으며, 종합과세 대상임.
 -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1993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과세 됨.
 -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2)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주식 양도소득 과세)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됨.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 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 * 상장주식거래 중 장외거래를 통한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분류과세)되며, 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통산 후 순차손은 이월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 나머지는 20%임.

- 한편,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3년 신고 기준 약 5,527억원이며 전체 자산 양도소득의 약 33.7% 규모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큼.

<표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그 외 주식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로 과세	

출처 : 홍범교, 김진수 (2010),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 **(채권 양도소득 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채권의 발행할인액(original issue 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한편, 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debt obligation)로 인한 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 발행 이후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시장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현행 제도는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

-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과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으로, 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과 동시에 거래될 경우, 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 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

3. 금융자산 거래과세

(1) 증권거래세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에는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왔으나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과세대상 범위가 넓혀져 왔음.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 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 원에 이룸.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함.
 - 서울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은 0.3%, 비상장주식 등 기타는 0.5%임.
 - 납세 의무자는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 되는 비상장주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금융투자업자, 기타의 경우 양도자임. (증권거래세법 제3조)
 - 대차거래(stock lending)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

(2) 기타 거래과세

- **(인지세)**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 1950년 3월 10일 제정
 - 증권의 종류에 따라 100원 또는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증서에는 2만원에서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
 - 인지세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인지로 하도록 한다는 세금징수상의 특징이 조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과세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거래세의 일종임.
-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은 업종방식과 행위방식에 따라 면세대상을 규정하며, 상당히 넓은 폭의 면세가 인정됨.
 - 금융·보험업자의 내재적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EU국가 제도의 영향을 받았음.

■ **(교육세)** 교육세는 금융자산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 전단계세액공제 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

○ 결과적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원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

4. 해외사례

(1) 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

■ **(미국)** 내국세 과세의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포괄주의에 의한 과세: 분리과세의 배제)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없으며, 내국세입법상 분리과세 즉, 완납적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10-39.6%)로 종합과세되며, 법인의 배당 소득은 과세 시 소득공제가 적용 됨.

○ 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 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과의 합산에 있어 제한이 있으나 이월공제는 가능함.

- **(일본)** 일본은 2009년 금융소득일체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과 과세방식 균형화, 손익통산 범위확대, 납세환경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 특정계좌를 통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미신고 선택이 가능함.
 -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독일)**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가능
 -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허용
 -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도 도입
 - 한편,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 60% 과세로 과세 비중이 높게 조정됨.

- **(스웨덴)**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

 - 자본소득에는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이 포함되며,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만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

■ **(영국)**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용하며, 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

○ 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 세율은 소득 개별유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

*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어짐.

*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종류를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 소득별 세율구간에 따라 10%(basic rate), 32.5%(higher rate), 42.5%(additional rate)의 세율이 적용됨.

○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하고, 세율은 일반소득 세율에 따라 18%, 28%의 단일세율이 적용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되었으며,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

(2) 해외의 증권거래세

■ **(미국)**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결국 반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 (일본)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실무적 난해함을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표 3> 일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변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953	· 종합과세 → 원칙비과세화 「회수가 많거나, 매매주식수가 크거나, 사업양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1953 도입 (양도 소득세 대체)
1988	(1988년은 소비세를 도입한 해였음) · 원칙비과세 → 과세화 택일 「 신고분리과세 : 양도차익 20% ↳ 원천분리과세 (간주이익방식) : 양도가액의 1%	1988 세율 인하 (0.55→0.3%)
1998	· 세제개정요강 : 「3. 1 (3)주식등양도소득과세 (주) 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융시스템개혁의 진전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되, 주식등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	1998 세율 인하 (0.3→0.1%)
1999 2001.4 긴급경 제대책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 통합하여 법개정 — (원천분리과세폐지) (2001년 4월 ⇒ 2003년 4월) ↓ 일원화 2년간연기 · 장기보유주식에 관계되는 소액양도익비과세제도창설 (2001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폐지 (1999)
2001 가을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시기 앞당김(2003. 4 ⇒ 2003.1) · 신고분리과세 세율인하 상장주식등 26% ⇒ 20%(2003 ~ 2011) 1년초과보유 상장주식등 20% ⇒ 10%(2003 ~ 2005) · 상장주식등양도손실 이월공제제도 창설(2003 ~) · 긴급투자우대조치창설 (2001.10.30 ~ 2002말취득 · 2005 ~ 2007양도)	

자료 : 일본 재무성

- **(독일)** 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
- **(스웨덴)**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 주식의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1991년 말 증권거래세는 완전 폐지됨.
 - 1986년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고 과세 대상도 확대하였으나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래량 위축 및 자본의 역외 이탈로 세수도 위축되자, 1990년 4월 15일 채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시작으로 1991년 말 증권거래세가 완전폐지
- **(영국)**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1964년부터 증권거래의 기록 즉, 등록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
 - 인지세율은 1974년 2%에서 1984년 1%, 1986년 0.5%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며 1996년 정부의 폐지시도가 있었으나 인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현행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임.
 - 영국의 인지세는 인지세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무기명증권이나 ADR과 같은 영국 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권의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III.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vertical equity)은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자본시장에서 수평적 형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함.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임.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세력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 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해야 함.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은 총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주관적 비용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 간 과세형평

■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형평이 저해

* 이자와 배당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담세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 실질적인 결손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 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어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하여 과세를 위해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연금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 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 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한편, 양도 시에는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원칙적 비과세, 일부 과세되며 간접투자는 과세됨.

-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 시에는 비과세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뿐만 아니라 양도 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의 결합으로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보유와 양도 모두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임.

○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선호할 수 있음.

○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에 따라 과세 상 취급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됨.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 간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됨.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하여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져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

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내·역외 여부에 따라 과세 차이가 발생

<표 4> 상품별·투자방식별 과세체계

금융상품	발생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채권	이자, 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국내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 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	환차익	비과세	과세

IV.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1단계: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다만, 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 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정보다는 안정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유지하기보다는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할 필요

2단계: 금융소득 개념 도입

-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 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
 -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 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을 포괄

- 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과세를 포괄화하고 단순화
 -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현행 분류는 유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금융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
 - 새로운 금융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세기간 간 또는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필요
 - * 양도차손(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에 있어 금융소득의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한 과세부담 감소와 과세형평성 저해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새로운 '금융소득' 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수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

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

■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종류 간 수평적 과세형평 침해여지

* 또한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고액금융자산가를 저소득투자자에 비해 과세 상 우대한다는 수직적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도 지적

○ 그러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을 제고

○ 또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

○ 더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평생소득차원에서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완화하고 징세를 단순화하여 국내외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도 존재

■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고소득층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 또한, 저소득층의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이나 한계세율의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I. 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세제의 목적은 세원확보, 효율성 및 형평성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 세원확보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세원 확보에 유리할수록 바람직한 세제로 평가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제고와 사회적 후생 증가를 중요시하며, 형평성은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중요시함.
 - 특히,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뿐 아니라 금융 자산 간 차별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경제 현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세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
 - 원칙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보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 금융소득이 특정 기준 이상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소득의 종류 및 한도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달리 적용되기도 함.
 - 특히, 금융소득 중에서도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대신 세수확보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 주식 양도의 경우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최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원칙적인 비과세는 유지되고 있어 금융 자산 간 조세 형평성은 여전히 위배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하고 자산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현재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지만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 그러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소득의 근원이 동일함에도 과세 상 차별이 존재하게 됨.
 - 그 외에도 금융소득 간, 투자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산재되어 있음.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금융세제는 소득 간, 금융자산 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함.
 -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한편 금융세제의 변화가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일관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금융체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계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우선, 현행 국내 금융자산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함.
 - 또한 해외 주요국들의 과세체계 및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방향 설정을 모색함.
 - 세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II. 금융자산 과세체계

1. 금융자산 과세현황

- 우선,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 금융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도록 함.
 -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좁은 의미의 금융자산과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하고자 함.
 -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거래를 뜻함.

-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와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ability to pay)으로 보아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 * 금융자산의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들 수 있음.

-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는 거래시스템 등 사회의 편익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거래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거래세는 응능과세(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적 성격보다는 응의과세(납세자가 받은 편익에 따라 과세)적 성격이 강함.

- 거래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세인 증권거래세와 인지세가 있음.
 - 부가가치세는 국민생산을 구성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바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은 부가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를 이전할 때 명의를 이전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로서,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주식양도자가 가짐.
 - 인지세는 법률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에 유상의 인지를 첨부하게 하는 것인데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주권, 채권, 자금차입 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과세하고 있음.
 - * 개인이나 법인투자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데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교육세는 금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면세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 과세로서의 성격이 있음.

2. 금융자산 소득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하며,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한 실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

외) 및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제외)의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단, 파생상품 소득은 2016년부터 과세예정임.

□ 주식과 채권은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각각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이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중 가격상승분(즉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반면, 펀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과세 대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

○ 주식과 채권은 양도 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세제적격 펀드는 환매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음.

○ 다만,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평가이익 및 환매이익 중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일부 손익과세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가능하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이익도 유보가능(소득령 26-2)함.

<표 II-1>

현행 금융자산 소득과세 현황

	보유	양도 또는 환매
주식	- 배당소득 과세 :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 : 가격상승분(평가차익) 비과세	- 원칙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예외 : 비상장, 대주주상장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채권	- 이자소득 과세 :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발행할인액 포함) - 계속적·반복적 매매의 경우 사업 소득 과세
혼합증권 : CB, BW 등	- 이자소득 과세 (상환할증금 포함)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파생결합증권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환매차익 배당소득 과세
파생상품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펀드	- 배당소득 과세 : 과세기준가격 상승분. 단,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 과세제외 : 펀드단계 평가차익 유보가능 (개정안에서는 매매차익도 유보가능)	- 배당소득 과세 :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 비과세

자료: 문성훈, 2010,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6-3, p.350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되었으며,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이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이후 1996년까지 실시되었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1년 이후 재실시 되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 *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넘는 조건으로 종합과세되므로 일종의 조건부 종합과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의 결과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교과세
 - 반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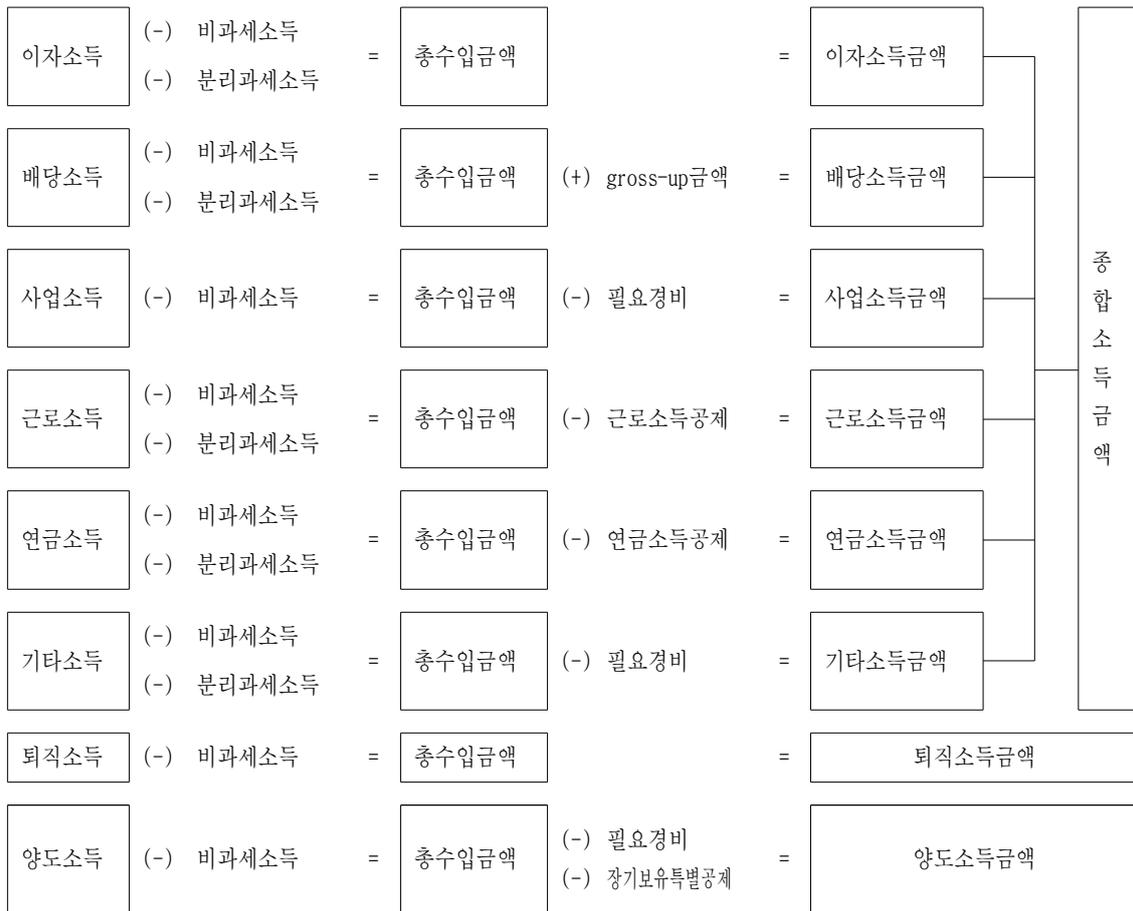
- 한편, 소득세법상 각 소득금액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 즉, '소득'(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전의 금액이며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gross-up으로 인해 이자소득과는 달리 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gross-up 절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가산금액을 말하며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제공되는 광범위한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인해 실제 이자소득 중 과세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음.

<그림 II-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2)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들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상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장외거래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 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 * 단,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1%/25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20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임.
 -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식
 -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분류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의 5월말까지 신고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양도가 한 건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부동산, 주식 및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유사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
- 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산 후 순차손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 나머지는 20%임. (소득세 제104조 제1항 제11호).

<표 II-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그 외 주식	10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로 과세	

출처 : 홍범교, 김진수 (2010),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한편, 양도차익과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3년 신고 기준 약 5,527억원으로 전체 자산 양도소득의 약 33.7% 규모임.

○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3>

주식양도소득 신고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양도소득 전체	주식	비중
2010	자산건수	53,787	4,289	8.0
	양도소득	1,683,156	394,334	23.4
2011	자산건수	47,108	2,837	6.0
	양도소득	1,499,357	325,392	21.7
2012	자산건수	44,751	4,086	9.1
	양도소득	1,539,557	453,884	29.5
2013	자산건수	48,779	6,826	14.0
	양도소득	1,638,984	552,720	33.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참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절차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즉, 법인 및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
 -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2015년 현재 요건은 아래와 같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또는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2%(코스닥상장법인은 4%,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상장 법인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대주주로 간주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함.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이면 20% 세율로 과세함.

-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식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수 시 증권사에 지불한 거래수수료, 매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기준 매매차익을 계산함.
-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연도 별로 통산이 가능하나, 여타 양도차익과는 통산이 불가능함.

2) 채권 양도소득 과세

-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한편, 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debt obligation)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
 - 그러나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 수년간의 양도차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그러나, 채권 양도소득은 자본투자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투자 소득은 과세하는 데 채권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불공평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침해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채권 발행할인액(original issue 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의 발행할인액은 만기상환금액(액면가액)에서 할인(또는 할증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채권 보유 기간 중 이자지급일에 일정부분씩 안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할인발행된 채권에 투자한 경우 액면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기간으로 안분된 발행할인액(즉, 발행할인액 상각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즉 ‘액면이자+발행할인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이자+발행할증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한편, 채권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²⁾

*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은 ‘발행’시의 할인율이나 할증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 발생한 채권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님(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3)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소득세법 제1항 제5호, 2014.12.23 신설)

○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

1) 최영렬, 2011,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p.90

2) 다만 최근 심판례(조심2014서0085, 2015.4.1)에서는 발행할인액과 시장할인액 구분없이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음.

- 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
-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기본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며, 예정신고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
 -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선물과 옵션의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또는 만기도래 시 정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들이 설정한 포지션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됨.
- 선물, 옵션 및 스왑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형태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의 형태에 관계없이, 거래참여자들은 포지션 설정 이후 상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부담 주체가 됨.
 - 실제 파생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각 참여자의 순 손익의 합계는 '0'이므로 zero sum게임임.
 - * 가령, 파생상품거래는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설정한 양 방향의 거래자에 의해 발생하고,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한쪽에 이익이 날 경우 다른 한쪽은 그 이익만큼 손실을 입게 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이며, 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실제, 파생상품거래는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 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헤지를 위해 주식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동시에 투자할 때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비과세 되므로 주식거래 차익을 높이고 파생상품거래 차익은 줄이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

3. 금융자산 거래과세

(1) 증권거래세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에는 자본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 당시 증권거래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과세의 부담이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 증권거래세 도입 및 그 세율의 적정성이 옹호된 바 있음.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왔으나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과세대상 범위가 넓혀져 왔음.
 - 그러나 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되면서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되었음.
즉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
다고 알려져 있음.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 보다는 세수 측면에
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내국세 중 증권거래세 세수 비중은 도입 초기인 1979~86년의
기간에는 0.1~0.2% 수준에 머물다가 주식시장이 호황을 구가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0.5~2%의 수준으로 커졌음.

○ 특히 1988~89년 주식호황기에는 2.0~2.7% 수준으로, 그리고
1999~2002년의 호황기에는 2.4~3.8% 수준으로 팽창한 바 있으
며, 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원에 이룸.

○ 이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전 일본의 증권거래세
세수수준에 이르는 것임.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이 크지 않은 편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유상양도가 있을 경우 당
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0.3%의 세율로 과
세하고, 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에는 0.5%의 세율로 과세(증
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증권시장에서 양도 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임.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밖의 사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증권거래세법 제3조).

□ 주식대차거래(stock lending)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

- stock lending은 short sale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옵션 및 선물과 결합하여 합성된 파생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세제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표 II-4> 증권거래세 부과 현황

(단위: 건, 십억원)

연도	합계		코스피주권		코스닥주권		기타주권		비과세주권	
	신고건수	세액	신고건수	세액	신고건수	세액	신고건수	세액	신고건수	세액
2005	149,772	2,489	12	1,032	12	1,300	149,398	156	350	-
2006	134,624	2,483	12	1,087	12	1,251	134,238	143	362	-
2007	136,769	3,506	12	1,789	12	1,475	135,769	241	628	-
2008	132,259	2,755	12	1,647	12	9,097	132,259	197	362	-
2009	126,333	3,569	12	1,849	12	1,557	126,333	163	524	-
2010	116,687	3,691	12	2,078	12	1,449	116,687	163	612	-
2011	107,873	4,336	12	2,479	12	1,667	107,647	190	214	-
2012	107,978	3,501	12	1,725	12	1,586	107,753	191	213	-
2013	103,624	3,001	12	1,476	12	1,354	103,368	171	232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기타 거래과세

1) 인지세

-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에는 4백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1백원의 인지세를 부과
 - 또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
 -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 1950년 3월 10일 제정

- 인지세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인지로 하도록 한다는 세금징수상의 특징이 조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과세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거래세의 일종임.
 - 인지세는 법률행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응익과세의 하나임.

2)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같이 일정한 산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음.(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은행업 이외의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아래에서 열거

- 은행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 규정은 업종방식과 행위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넓은 폭의 면세가 인정

- 먼저 업종방식으로 규정하고 그 업종에 부수하는 것도 포괄하고 있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 이와 같이 면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간에 미묘하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정부는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준 것으로 간주

* 그런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나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식(내재적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

- 금융보험업자의 내재적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면세제도는, 국가는 재정수입은 일실하지 않으면서 면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EU국가들의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
 - EU국가들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1977년 EC의 제6차부가가치세지침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며, 1973년 Hutchings Report에 의하여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안이 보고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된 것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것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 EC와 OECD의 공동 작업으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간이현금흐름세방식(truncated cash flow method)을 제시³⁾하였으나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함.
 - * B2B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B2C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소비자로부터 일정 세액을 거래징수

3) 교육세

-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 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
 -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금전대부업자 등(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로 교육세를 부과(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³⁾ <http://ec.europa.eu/taxationcustoms/resources/documents/tcasystemexecutive.pdf>

- 교육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소득금액)/(수익금액)의 비율을 5%로 전제한다면 금융회사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원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의 총마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가는 금융·보험업자 단계까지의 부가가치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납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약점은 여전히 존재

4. 해외사례

(1) 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

1) 미국

- 미국의 내국세 과세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 분리과세의 배제)

-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소간의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세부담 수준의 조정에 주안점을 둔 것일 뿐 과세체계나 과세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었음.
- 개인의 금융소득은, 각 유형별로 소득에 귀속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단일소득세율체계로 과세
- 금융소득과 여타의 소득간의 과세방식, 소득금액 계산 및 세율의 적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자, 배당, 자본이득, 파생상품소득 등 금융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 상 다소간의 차이를 두고 있음(각 금융소득 유형별 특성 인정)
- 미국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없으며, 내국세입법상 분리과세 즉, 완납적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
 - * 금융소득을 수취하는 납세자가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보완원천세(back-up withholding tax))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는 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됨
 - * 미국국세청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해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ying number)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율(10,15,25,28,33,35,39.6%)로 종합과세되며, 다만, 법인의 배당소득은 과세 시 소득공제가 적용 됨.

-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채권이나 공익목적 채권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결혼여부,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 세대주, 생존배우자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 배당소득 역시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나, 법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비율은 지분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 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법인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수입 배당금의 70%를 소득공제하고, 20%이상 80%이하인 경우에는 80%를 소득공제 함.(26 USC § 243)
 - * 같은 그룹(affiliated group) 안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소득공제 함.
 - 2010년까지는 한시적 조치로서 배당소득의 경우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가 2003-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소득세율이 25%이하(10% 또는 15%)인 저소득층 납세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았음
 - 실제 개인이 받는 배당(dividend)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이자소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 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과의 합산에 있어 제한이 있음(내국세입법 제1조(h)(1))
- 1년의 자산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함. ((IRS Form 1040, Capital Gain and Losses)
 - 단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39.6% 내에서 적용함.
 -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0, 15, 20%)을 적용하며, 자본손실은 여타 소득과의 합산에 제한이 있음.
 - * 장기자본이득에서 장기자본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 장기순자본이득에 세율을 적용

- 자본손실과 자본이득의 상계에는 제한이 없지만, 장기자본손실은 우선 장기자본이득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단기순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음.

* 순손실 발생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항목부터 이익을 차감하게 되며, 단기순자본 손실 발생시에도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여, 납세자에게 가급적 적은 금액이 부과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일반소득과의 상계는 연간 3천달러로 제한되며, 남은 손실은 연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

<표 II-5> 납세자 특성별 소득세율(2015년 기준)

일반소득세율 (%)	과세소득범위 (US 달러)				배당 및 장기자본이득세율(%)
	독신	기혼 (합동신고), 생존배우자	기혼 (별도신고)	세대주(가장)	
10	0이상 9,225이하	0이상 18,450이하	0이상 9,225이하	0이상 13,150이하	0
15	9,225초과 37,450이하	18,450초과 74,900이하	9,225초과 37,450이하	13,150초과 50,200이하	0
25	37,450초과 90,750이하	74,900초과 151,200이하	37,450초과 75,600이하	50,200초과 129,600이하	15
28	90,750초과 189,300이하	151,200초과 230,450이하	75,600초과 115,225이하	129,600초과 209,850이하	15
33	189,300초과 411,500이하	230,450초과 411,500이하	115,225초과 205,750이하	209,850초과 411,500이하	15
35	411,500초과 413,200이하	411,500초과 464,850이하	205,750초과 232,425이하	411,500초과 439,000이하	15
39.6	413,200초과	464,850초과	232,425초과	439,000초과	20

주: 독신(Single), 기혼·합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생존배우자(Qualifying widow), 기혼·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erately), 세대주·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표기하였음.

출처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5 federal tax rate

- 한편, 장기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손실 발생 시 개인과 법인에 다른 규정이 적용
 - 장기 양도차익은 매입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단기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됨.(0%, 15%, 20% 세율 적용)
 - 'The Tax Relief Act of 2010'에 의해 기존의 세율구간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되고 보유 기간의 구분이 '1년미만', '1년~5년', '5년이상'으로 세분화 됨.
 - 순양도손실 발생시 개인은 3,0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미국은 개인소득과세에 있어 포괄주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선물, 옵션 등의 손익은 60%를 장기자본손익으로 40%를 단기자본손익으로 처리(내국세입법 제1234조)
 - 단기손익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손익은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

<표 II-6>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

구분	소득인식 시기	소득의 성격
선물	- 시가평가(결제 후 재조정) - 헤지거래는 시가평가 안함	- 자본손익으로 취급 - 40%는 단기자본소득, 60%는 장기자본소득 간주 - 헤지거래는 경상손익으로 취급
옵션	- 시가평가	- 자본손익으로 취급 - 40/60 규정 적용

주: 위 표의 선물과 옵션은 모두 내국세법 12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 상품을 지칭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2010)

-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은 비용을 인정하고 결손금(순손실)은 투자자산소득 내에서 이월공제가 무기한 허용
 -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property held for investment)으로서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자, 배당, 연금(annuities), 사용료소득(royalty), 양도차익(gains)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
 - * 즉, 투자자산은 납세자의 소득창출에의 참여(participation) 정도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으면서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
 - *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러한 소득을 투자자산소득이라 하며, 금융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때’ 당해 자산은 투자자산이 됨
 - 내국세입법은 주요 소득항목을 예시하면서 그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에 귀속되는 비용만을 차감
 - * 소득유형을 자본이득(capital gains), 수동적활동소득(passive activity income), 도박소득(gambling income),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 투자자산소득 (investment income) 등으로 구분
 - * 소득유형별로 지급이자 등 소득창출비용의 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일부 소득유형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타 소득유형과 상계하지 않고 동일 유형의 차기소득과 상계를 위해 이월 처리
 - 투자자산소득도 동일한 유형 간에 소득상계가 가능하고 결손금도 무기한 이월가능
 - * 투자자산소득은 투자자산이익 이외에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을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투자자산손실은 순영업이익(net operating income)과 상계할 수 없음
 -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은 크게 투자자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조달한 자금비용인 투자자금이자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

- * 투자자금이자(investment interest)는 ‘순투자소득금액’(net investment income)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되며, 순투자소득금액이 투자자금이자에 미달할 경우(결손금)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이월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 * 기타의 비용에는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투자자문료, 사무보조비, 금고사용료, 법률자문료 등 투자자산의 취득, 유지 및 처분에 따르는 비용이 있으며, 잡손공제(miscellaneous deduction)항목의 하나로 조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 초과분 범위 안에서 공제가 인정

2) 일본

-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제고, 세제의 단순화, 일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 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부터 자본이득 비과세, 1955년부터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전환
 -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조세제도 개혁 단행
 - 2007년부터는 최저세율 5%, 최고세율 40%의 6단계 세율구간을 갖는 소득세 체계로 개편
- 2009년 도입된 금융소득일체화 제도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과 과세방식 균형화, 손익통산 범위확대, 납세환경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1997년 일본 세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 이원적 소득세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일본식 금융빅뱅을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연구
- 2000년 7월 중간보고서 “일본조세시스템:현실과 과제”에서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여러 논의가 전개
- 2002년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향후 검토 과제로 규정
- 이에 따라 이전까지 종합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던 배당소득이 2003년부터는 이자소득 및 증권자본이득처럼 분리과세대상(이자소득 및 증권자본이득과 같은 세율로)으로 전환
- (과세방식 균등화: 20% 분리과세) 다음의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 ①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배당, 공모주식투자신탁 수익분배금
 - ②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익
 - ③ 외화예금이익
 - ④ 금융소득과 유사한 보험수익
- (손익통산범위 확대) 주식양도손실과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범위에 이자소득도 포함
 - * 다만, 수년간 축적된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자본손익과 매년 과세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통산하는 데 따르는 세수 상 영향을 고려하여 통산의 범위는 제한
- (납세환경 정비) 손익통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
- 손익통산이 실무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당국 신고가 필요하고, 세부당국은 번호를 이용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배당 지급자가 제출한 지불조서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함.

<표 II-7>

2009년 과세체계 변화비교

구분	과세방식		
	과세소득일체화 반영전	과세소득일체화 반영후	
이자소득	일률원천분리과세	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원천분리선택과세 '03년 폐지)	상장주식 소액주주 신고분리과세 도입	
양도 소득	주식	'53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과세(회 전율이 높거나 사업과 유사한 경우 는 종합과세('89년 이전))	신고분리과세로 전환('89년)
	채권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 익 종합과세	2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파생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유지	'89년부터 주식과 동일하게 신고분리과세 소득과세 도입

출처: 금융투자협회 『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조사보고』 (2012.4)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 * 일률원천분리과세: 비례세율로 일률 과세되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
 - 배당소득은 주식양도손과 손익통산하기 위해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0%임.
 - 또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
 - 기타 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며, 20%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됨.

<표 II-8>

일본의 이자과세제도

이자소득	개요	
	소득세	주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및 공사채이자, 합동운용신탁 및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분배 등 ○ 보통예금, 통지예금이자 등 요구불예금 	15%의 원천징수	주민세 5%
	원천분리과세	

자료: 금융연구원(2012)

<표 II-9>

일본의 배당과세제도

		2008년	2009년 이후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중 선택 1. 종합과세: 배당공제적용 5~50%의 세율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 신고불요: 20%의 원천징수 (소득세 15%, 주민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 중 선택 1. 종합과세: 배당공제적용 5~50%의 세율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 신고분리과세: (소득세 15%, 주민세 5%) 3. 신고불요(소액배당): 20%의 원천징수 (소득세 15%, 주민세 5%)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등	상장주식의 배당 (대주주이외)		
	상기 이외	종합과세(배당공제적용): 소득세 20%의 원천징수	

주: 1) 상장주식의 배당(대주주 이외)은 그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발행된 주식총수의 5% 미만인 자가 지불받는 배당을 의미

2) 신고분리과세: 특례조치로서 2009년, 2010년은 배당소득이 연 100만엔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소득세 7%, 주민세 3%), 100만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소득세 15%, 주민세 5%)를 적용

주3: 신고불요: 특례조치로서 2009년, 2010년은 10%로 원천징수(소득세 7%, 주민세 3%)

자료: 금융연구원(2012)

- 또한, 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 특정구좌를 통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의 주식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채권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구좌 내 소액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비과세(투자한도 : 3년간 총 3백만엔)
 - 파생상품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선물·옵션거래차익은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손실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3개년 이내까지 이월공제 가능
 -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손익통산을 허용
 - 파생상품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실통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물과 파생상품 양자 간의 양도손익 통산도 불가능

<표 II-10>

일본의 금융상품 손익통산의 범위

손실발생	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이자소득	비과세
손실발생	상장주식 배당/ 공모주식투자신 탁 수익분배금	상장주식양도익/ 공모주식투자신 탁의 양도익	예적금 이자/ 공사채 이자/ 공사채투자신탁 수익분배금	공사채양도이익/ 공사채투자신탁 양도이익
주식양도손/ 공모주식투자 신탁양도손·해 약손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불허	해당 없음
공사채양도손/ 공사채투자신탁 양도손·해약손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료: 일본 재무성

3) 독일

-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9년 세계 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 제안, '05년 정당간 합의, '06년 연방 재무부 자문관실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 제안, '08년 세계개편 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침.
 - 조세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 포괄주의 과세 및 이원주의 소득과 세 원칙을 따름.
 - '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

천징수),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 전환, 자본손실 상계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짐.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⁴⁾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가능

○ 2008년까지 독일에서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09년 세제의 변화로 과세대상에 포함

○ 파생상품소득은 종전에는 주식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였는데 현재는 주식과 함께 과세대상에 편입

○ 자본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 만약 납세자의 판단으로 종합신고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5%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25%의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금융소득합산 과세시의 비교과세제도는 실효세율이 하방경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인 반면, 독일의 완납적 분리과세 제도는 실효세율이 상방경직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

□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

○ 증권양도손실은 유가증권양도차익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가능

○ 자본자산 창출을 위한 비용, 예를 들면, 금융비용, 계좌관리비용,

4) 오윤 · 임동원, 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4-1, pp.71-72

자본비용은 실비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하며, 부부에게는 1,602유로의 공제를 허용

- 투기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또한, 독일은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 이후 전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이른바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를 도입

- 21세기 세제개혁을 둘러싼 논의에는 백화제방이라 할 만큼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제안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조세 단순화와 세율 인하에 대한 것이었음.
- 이들 중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 독일에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2005년 11월 11일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및 사회민주당 등 기존 정파들의 공동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제도 개혁의 힘이 되었음.
- 20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은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Reform der Einkommens- 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 Einkommensteuer)를 제안하였음.

□ 한편,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 나머지 절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었으나 2009년 1월 개정 후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 60% 과세로 조정됨.

○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5%의 단일세율로 확정하면서, 이로 인해 줄어든 세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작용

* 예외적으로 배당소득 중 양도차익에 기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비율을 50%로 적용

<표 II-11> 독일의 금융상품소득과세

자산	소득종류	과세방식
예금	이자소득	단일세율 ⁵⁾ 원천징수
채권 (bond)	이자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
주식	배당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60%만을 단일세율 원천징수 ⁶⁾ ; 장기보유비과세 및 양도소득공제 제도 폐지; 경과조치(2008년말 현재 보유분으로서 장기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 면세)
펀드 ⁷⁾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동
fund of funds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동; 다만, FoFs(fund of funds)는 Abgeltungssteuer 없이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 있음
공모 부동산 펀드	양도소득	펀드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에 의해 펀드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득 계산시 비과세
파생 상품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 장기보유 면세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자료: 한국세법학회, 2010,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수정

5) 25%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됨. 이에 5.5%의 solidarity surcharge(연대부가세)가 붙어 실제 세율은 26.375%가 됨.

6) 법인세와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장치(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7) 투자대상은 equity, mutual, bonds 등이 됨

4) 스웨덴

-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
 -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이전에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이 포함되며,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만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
 - 손실 인정금액이 자산 종류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스웨덴 내 발행채권과 스웨덴 내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회사주식의 양도차손은 100%, 주택의 양도차손은 50%, 나머지 자본·자산의 양도차손은 70%가 인정되며, 일반적인 주식 양도손실의 70%까지는 자본이득과 통산가능
 - 손실 인정금액이 자산 종류별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그룹의 자산과의 손익상계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 자본손실은 십만 크로네까지는 자본소득의 30%, 이를 초과하는 손실의 21%까지는 근로소득과 상계가능⁸⁾

5) 영국

- 영국에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용하며, 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⁸⁾ 국중호·김진수, 2007,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금융소득과세의 구축방향, 세무학연구 24-2, p.44.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

○ 일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 세율은 소득 개별유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

* 과세표준액을 소득크기에 따른 세율구간(basic rate, higher rate 등)으로 나눈 후, 각 세율구간에 매칭되는 유형별(배당소득 등) 세율을 적용하게 됨.

* 합산된 과세표준액에 소득 유형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유형을 합치는 순서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며,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합산하게 됨.

*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함.

○ 조세관련 입법이 연간 세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세율이 수시로 변화

□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어 짐.

○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계산함.

○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동일한 이자소득이라도 먼저 과표에 합산되는 '비저축소득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비과세 상품으로는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이 있으며,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 예치금 이자는 일정소득이 비과세 됨.

-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한 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 소득별 세율구간에 따라 10%(basic rate), 32.5%(higher rate), 42.5%(additional rate)의 세율이 적용됨.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없음.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부분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부분조정제도란 법인단계에서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 수입배당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임.
 - 영국 내 소재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이중과세되지 않으나, 영국 내 소재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전액 과세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
 - 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가 무제한 허용되고, 장기·단기 자본이득의 구분 없이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에 따라 18%, 28%의 단일세율이 적용
 - * 종전 자본이득에는 3단계의 누진세율(10%, 20%, 40%)이 적용되었는데 2008~2010년의 기간에는 18%의 단일세율로 전환되었으며, 체감공제(taper relief), 물가연동공제 등의 공제규정이 폐지
 - * 2011년부터는 세율이 다시 두 개로 환원하여 일반소득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18%, 28%의 세율이 적용
 -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공제규정(즉,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이 폐지되었으며,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
 - *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에는 1982년 3월 31

일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의제규정시에는 시가와 원가 중 택일)

<표 II-12> 과세구간별 자본이득세 세율(개인과세)

	2007~2008 (누진세율)	2008~2009 (단일세율)	2010.4.6.~ 2010.6.22.	2010.6.23.~
starting	10%	18% 적용	18%	18%
basic	20%			28%*
higher	40%			

주: 2010.6.23.부터 고소득구간에 28%세율이 적용되어 이원화된 형태를 보임.

자료: 자본이득과세의 정비에 관한 연구(조세연), 금융연(2012) 재인용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
 - 동 제도는 2007년 10월의 세제개혁에서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 단계적 공제 제도는 1998년 이후 자산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용 자산이득 또는 비업무용 자산이득의 분류에 따라 개별적 공제비율을 적용
 - 주식은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개인이 주주와 관련 없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취급함.
 - 단계적 공제 제도 폐지 이후 업무용자산의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보완책으로서 2008년 1월 기업공제(enterprise relief) 신설
 - * 기업공제제이란 사업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중 최초 £1백만의 유효세율이 10%가 될 수 있도록 자본이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표 II-13>

단계적 공제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대상

(단위: %)

보유기간	1998.4.6.~2000.4.5		2000.4.6.~2..2.4.5		2002.4.6.~2008.4.5	
	업무용	비업무용	업무용	비업무용	업무용	비업무용
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년	92.5	100	87.5	100	50	100
2년	85	100	75	100	25	100
3년	77.5	95	50	95	25	95
4년	70	90	25	90	25	90
5년	62.5	85	25	85	25	85
6년	55	80	25	80	25	80
7년	47.5	75	25	75	25	75
8년	40	70	25	70	25	70
9년	32.5	65	25	65	25	65
10년 이상	25	60	25	60	25	60

주: '08.04.06. 이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Taper Reliefs 혜택이 적용 안됨.

자료: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조세연), 금융연(2012) 재인용

-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됨.
 -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양도손실은 단계적 공제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고, 초과손실의 소급 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의 경우에만 적용됨.

-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
 - 2007년 과세개혁 이후 18% 단일과세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6월 부터는 18%와 28%의 두 가지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 28% 세율은 고소득구간(higher rate) 이상에서 적용됨.

(2) 해외의 증권거래세

1) 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 주식 이전의 경우 0.04%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0.028%, 주식이전 0.0033%).

- 미국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프랑스, 독일 등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면서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반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 이후 '금융위기책임부담금'(소위 '은행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변질되다가 결국 이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채로 일단락
 - 조세를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성과 없이 종결된 것은 금융거래세가 시장안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반면, 제도 도입 시 자본의 국외유출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임.

2) 일본

-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세율이 꾸준히 올라 1980년대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1.4~1.5% 수준에 달함
 - 1990년대 초에는 파생거래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이 때 도입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합한 형태였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 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 주식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를 선택한 자는 실제 1.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1989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 일본이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1996년 이래 5년간 행해졌던 대대적인 일본식 금융개혁(Big Bang) 작업의 일환이었음.
 - 금융개혁 작업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할 뿐만

- 아니라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음⁹⁾
- 또한, 일본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를 추진하였음.

<표 II-14> 일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변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953	· 종합과세 → 원칙비과세화 「회수가 많거나, 매매주식수가 크거나, 사업양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1953 도입 (양도 소득세 대체)
1988	(1988년은 소비세를 도입한 해였음) · 원칙비과세 → 과세화 · 택일 「 신고분리과세 : 양도차익 20% ↳ 원천분리과세 (간주이익방식) : 양도가액의 1%	1988 세율 인하 (0.55→0.3%)
1998	· 세제개정요강 : 「3.1 (3)주식등양도익과세 (주) 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융시스템개혁의 진전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되, 주식등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	1998 세율 인하 (0.3→0.1%)
1999 2001.4 긴급경 제대책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 통합하여 법개정 — (원천분리과세폐지) ↓ (2001년 4월 ⇒ 2003년 4월) 일원화 2년간연기 · 장기보유주식에 관계되는 소액양도익비과세제도창설 (2001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폐지 (1999)
2001 가을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시기 앞당김(2003. 4 ⇒ 2003.1) · 신고분리과세 세율인하 상장주식등 26% ⇒ 20%(2003 ~ 2011) 1년초과보유 상장주식등 20% ⇒ 10%(2003 ~ 2005) · 상장주식등양도손실 이월공제제도 창설(2003 ~) · 긴급투자우대조치창설 (2001.10.30 ~ 2002말취득 · 2005 ~ 2007양도)	

자료 : 일본 재무성

⁹⁾ Dick K. Nanto, Japan's Landmark Financial Deregulation: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2000.6.

- 일본에서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제변화가 당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움
 -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던 1987년과 1988년(거래세기)의 세부담(증권거래세)은 거래액 대비 약 0.6% 수준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 수준
 - * 이 기간은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국외자본유출이 용이해진 여건 하에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실제 국외로의 자금유출이 심화되면서 국내시장이 위축¹⁰⁾
 - * Shinhua Liu(2007)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분석¹¹⁾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 수준

3) 독일

- 독일은 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
 - 독일은 증권거래세 폐지 직전 증권시장은 불안하였으며, 당시 증권거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2% 수준에 불과
 - 1991년 당시 독일 증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증권시장이 1987년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

¹⁰⁾ Maxim Shvedov, Transaction Tax:General Overview,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 2004

¹¹⁾ Shinhua Liu,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Market Efficiency: Evidence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J Fin Serv Res (2007) 32:161

한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이해가능¹²⁾

- 한편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채권 등 자본의 국외도피의 계기가 된 사례를 제공
 - * 영국에서 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독일국 고채거래의 **30%**, 그리고 독일마르크표시채권거래의 **50%**가 영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음

4) 스웨덴

-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 주식의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으며, 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였다. 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의 1%, 옵션을 행사할 때 프리미엄의 1%를 부과¹³⁾
 -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시장이 경제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음
 - * 스웨덴의 노동계는 후자의 주장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무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정계는 대중의 요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도입

- 스웨덴은 주식 및 파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증권거래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1986

¹²⁾ Hakkio, Craig S., Should we throw sand in the gears of financial markets, Economic Review-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994.

¹³⁾ McCulloch, Neil, and Grazia Pacillo, The Tobin tax: a review of the evidence., IDS Research Reports 2011.68, 2011. p.30-31.

년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이 두 배로 인상

- 1986년 7월부터 주식거래세율은 거래당 0.5%에서 1.0%로 상승
 - 이로 인해, 주식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11개 종목들이 런던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1990년 이들 종목 거래량의 52%가 런던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989년에는 채권과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음.
 - 채권에 대한 세율은 0.002%~0.0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채권시장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주식시장의 경우보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¹⁴⁾
- * 채권거래세가 도입된 첫 주 채권관련 현물과 선물 거래량은 각각 **85%** , **98%** 감소하였으며, 이후 점차 회복하였음.

¹⁴⁾ Campbell, J.Y. and Froot, K.A.,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in J. Frankel (e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quity Markets,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280-281.

<표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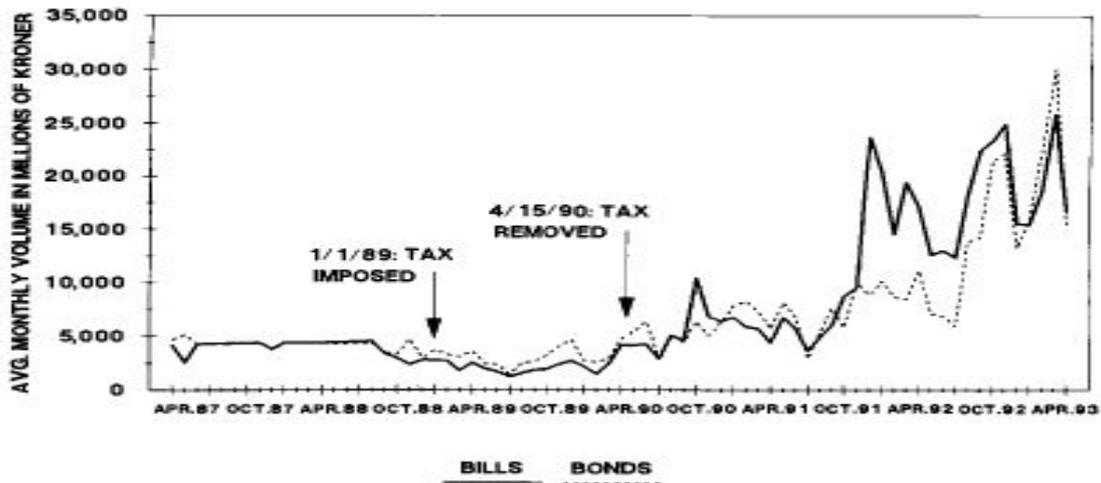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주식거래의 이동

	Revenues of Turnover Tax on Securities	Revenues of Turnover Tax 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Annual Swedish Trading volume	Trading of Swedish stocks inside Sweden	Trading of Swedish unrestricted shares inside Sweden
	In % of GDP	In % of total revenues	On equity traded, per round-trip	Executed in London	Average of 19 large Swedish companies	
1984	0.10	0.21	1%	NA	NA	NA
1985	0.13	0.27	1%	NA	NA	NA
1986	0.26	0.53	1%, 2%	NA	NA	NA
1987	0.35	0.66	2%	30%	NA	NA
1988	0.34	0.66	2%	48%	61%	47%
1989	0.45	0.85	2%	51%	57%	42%
1990	0.43	0.81	2%	52%	56%	42%
1991	0.25	0.50	1%	NA	52%	40%
1992	0.02	0.04	0%	NA	56%	50%

자료: Schulmeister, Schratzenstaller, and Picek (2008)

<그림 II-2>

금융거래세 도입 전후 채권현물 거래량 추이



자료: Campbell and Froot(1993), 금융연(2013) 재인용

- 결국 스웨덴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량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자본은 역외로 이탈하며, 세수도 위축
 -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오히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아울러 세수도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¹⁵⁾
 - * 주식거래세수는 1984년 8.23억 크로나에서 1989년 40.1억 크로나로 증가하였으나 15억 크로나로 예상했던 채권거래세수는 5천만 크로나에 불과
 - * 이에 따라 증권양도차익과세로 거둬들이던 세수의 감소분을 감안하면 금융거래세의 순 세수효과는 0에 가까웠다는 평가
- 1990년 4월 15일 채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1991년 1월 세율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1991년말 증권거래세가 완전폐지

5) 영국

- 영국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1964년부터 증권거래의 기록 즉, 등록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
 - 채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사가격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
- 인지세율은 1974년 2%에서 1984년 1%, 1986년 0.5%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행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임.
 - 2008.3.13 부터는 1회 거래가액이 1천 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

¹⁵⁾ Wrobel, Marion. Financial Transactions Taxes: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the Lessons for Canada. Library of Parliament, Research Branch, 1996.

- 영국의 인지세는 인지세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무기명증권이나 ADR과 같은 영국 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권의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영국에서의 인지세는 거래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지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거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영국정부는 1996년 인지세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아직도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내국세수의 0.7%수준에 이름

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 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¹⁶⁾
 - 즉,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은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과세하고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부담을 하는 누진세율체계가 요청¹⁷⁾
 - 납세자가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믿도록 해야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평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음¹⁸⁾

¹⁶⁾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p.44.

¹⁷⁾김용민·박동규·장재형·변혜정, 2014, 금융·금융거래·금융세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p.89.

¹⁸⁾최영렬, 2011,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p.21.

- 한편, 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
 -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형평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1조가 지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¹⁹⁾
 - * 즉,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종류별 실효세율 및 과세방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에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합리적 이유에 관련해서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사회 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²⁰⁾
 - 어떤 과세제도가 순수하게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는 위헌적 요소

¹⁹⁾이동식, 2015, 일반조세법(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p.146.

²⁰⁾헌재 1997.5.29 선고 94헌바5, 헌재 1999.11.25. 선고 98헌마55 등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제도를 설정한 구체적인 정책목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²¹⁾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를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인 소득금액)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 또한 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²²⁾해야 함.
 - 담세력의 정확한 계산 및 측정 없이는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평의 달성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담세력이 없는 처분불가능한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되어야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 동일한 금액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총수입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동일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²³⁾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
 -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21)임승준, 조세법, 박영사, p.46.

22)문성훈, 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4, p.20.

23)이동식, 2015, 일반조세법(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p.158.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주관적 비용은 세부담이 공평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양육비, 의료비 등을 들 수 있음

-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객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객관적 부담능력이며, 객관적 순소득금액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임.
 - 위의 정의와는 달리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부르기도 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과 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객관적인 경비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완납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담세력에도 부합하지 않음.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즉,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 측면에서, 주식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의 영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단, 여기서 과세형평 달성은 비과세 요소소득의 과세화를 의미하며, 모든 생산요소 간 세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형평이 저해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객관적 경비,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객관적 경비와 주관적 경비가 복합된 추정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적 부담능력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음.
 - * 금융투자를 위한 차입이자비용이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자와 배당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담세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용을 인정하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성격상 이를 검증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세제의 단순성을 위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

- 그러나,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아닌 한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 예금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증권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위험이 있는 금융자산이므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
 - 또한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거래의 계속, 반복성은 약하지만 개인 금융업인 사업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당 이외에도 펀드의 환매차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순수한 배당소득보다는 양도비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자본차익(Capital gain)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 * 펀드는 펀드가격의 등락에 따라 환매차익과 환매차손이 발생하지만 환매차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환매차손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음
 - *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제시조건이 성취되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시조건 미성취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 결손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형평이 저해
- 예를 들어, 투자기간 중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종료시 투자기간 중 수령한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음.
 - 과세기간간 통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간에도 통산(과세기간내 통산)도 불가능
 - *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 A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여 10,000,000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 파생결합증권 B는 2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와 B의 손익을 통산한 경우 10,000,000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10,000,000원에 대해서 과세
 - 정부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가능하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유인이 존재

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음.
 - 배당과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비롯되는 바, 경제적 원천이 동일함.
 - 그러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받고 있어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을 선호하게 됨.
 -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의 선호를 반영하여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사내유보 등)을 선호할 유인이 발생함.
 - 즉, 금융자산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하여 과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가령 채권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으로 해석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직접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으로 인식되어 비과세되고 있음.

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²⁴⁾

²⁴⁾ 문성훈, 2010,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6-3, 350-356.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 현행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직접 투자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비과세하고 있음
 - * 그러나,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직접투자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이 저해
 - 금융상품을 연금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이 자본시장법상 규제강도, 감독체계가 펀드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 일임형랩, 펀드 모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실질은 유사함.
 - 한편,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대주주 및 비상장주식)되지만,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시에는 비과세(계속적·반복적 거래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이 조합되어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
-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20%의 단일비례세율로 과세되는 등 과세상 차이가 존재
 -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선호하게 될 것임

- 펀드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 즉 펀드가 신탁 또는 조합형인지 투자회사형인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등 과세상 취급이 상이
 - * 회사형 및 신탁형 펀드인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데 비해, 조합형펀드는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외국납부세액 적용을 신청해야 함
 - *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이란 펀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펀드단계에서 환급하는 규정(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 * 개인투자자가 신탁형과 조합형 펀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회사형 펀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비상장 또는 대주주펀드)되거나 과세되고 배당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 금융상품 보유시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를 통한 양도대금 수령, 환매를 통한 환매대금 수령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상 차이를 두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방법에 따른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²⁵⁾

²⁵⁾ 문성훈 · 이영환, 2011,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부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자산에 투자하는 지 여부보다는 투자수익률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투자자가 국내투자와 더불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개인의 종합 자산관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 안정, 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음
 - *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소득세법의 '일부손익 과세제외' 규정을 통해, 2007.6~2009.12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펀드 비과세특례' 규정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한 바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해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등을 통해 해외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펀드

별 12-4, p.39.

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투자자의 경우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 *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여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20%의 단일세율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과세(분류과세)
 - *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면 여러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손익통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 * 투자자의 해외펀드 투자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세율(종합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 * 그러나, 해외펀드 투자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14%)이 양도소득세율(20%)보다 낮기 때문에 간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후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
 - * 소득세법상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펀드로, 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주식으로 보고 있음

□ 한편,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내해외펀드인지 역외 해외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의 차이가 발생²⁶⁾

○ 현행 소득세법상 역내해외펀드는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 등 펀드

²⁶⁾ 문성훈 · 이영한, 2011,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4, p.37.

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역외해외펀드의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통산하지도 않고 과세하지도 않음

- 역내펀드는 환매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과세되는 반면,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시에만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과세상 차별이 존재

<표 III-1>

상품별·투자방식별 과세체계

금융상품	발생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채권	이자, 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국내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 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	환차익	비과세	과세

IV.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개념을 도입이 필요

- 둘째, 의도치 않은 왜곡 최소화
 - 주식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배당과 처분 간 과세왜곡, 투자기구 및 투자지역 간 과세왜곡 등이 완화될 수 있음.

- 셋째,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금융소득 개념의 도입과 함께 손실통산이 확대되고 손실이월이 도입되면 위험투자(risky investment)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1단계: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였던 자본시장 투기거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79년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파악되나,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미약한 편임.
 - 또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던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재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1979년부터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반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를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정부에 제공하였음.
 - * 소액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있는 것은 응능과 세는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체하여 편익이 불분명한 곳에 거래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세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거래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일본은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등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병행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행하던 기간의 증권거래세율은 당초 0.55%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0.1%까지 낮아진 후 결국에는 폐지

* 세수효과 측면에서는 1989년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세수가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과거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경우보다 오히려 세수가 확대(최영렬, 2011,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p.100.)

○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에도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확보되는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소득과 세제도를 설계할 필요

* 증권거래세 폐지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시 조세중립성 제고에 따른 시장활성화 효과를 감안

<참고>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자본이득과세는 주가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실현을 미루도록 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위해 손실을 실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동결효과(Lock in effect)라 하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공급은 줄어 들게 됨.
 -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자본이득세 부과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 하는데, 이를 자본효과(Capitalization effect)라 함.
 - 동결효과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와 자본효과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음.
 -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동결효과와 자본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추측할 수 있음.

- 경제성장과 자본이득과세에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주식투자)에 대한 면세를 제공하는 방식의 우대가 투자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스웨덴에서는 증권거래세에 의한 자본이탈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를 보완
 - 독일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없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하며, 벨기에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있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원래 증권거래세만 있었는데 그것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일찍이 폐지되었으며, 최근에 증권거래세와는 무관하게 소득과세 개혁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가 확충

<표 IV-1> 주요 외국의 증권에 대한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거래세 ¹	자본이득과세 ²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과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합산과세 원칙 일부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폐지전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 채권에 대한 세율은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과세전환 2003년 원천징수분리과세와 종합신고 중 선택제도에서 신고분리과세로 전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인 20%로 과세 채권양도차익도 과세해왔음 자본손실 이월공제 3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완전과세전환(이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채권만 과세) 원천분리과세와 종합신고 중 택일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동일한 25%의 세율로 과세; 1년 이상 보유 증권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됨 채권양도차익도 과세 이월공제 허용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래부터 과세되어 옴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세(납세의무자는 취득자) 부과 : 주식에 0.5%의 세율로 과세, 채권은 비과세 동일한 내용의 인지세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년부터 과세함 신고분리과세 자본이득세율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세율과 상이함 채권양도차익과세 자본손실이월공제, 기한 제한 없음

¹ www.mof.go.jp/english/zei/report2/zc001f07.htm. 참조

²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OECD Tax Policy Study No.14, 2006.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찬반론

-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해가 존재함.
 - 금융소득으로 인해 금융자산 소유자의 경제력(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 하였으므로 과세는 타당함.
 - *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명제 부합함.
 -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 보다 높은 경우 이는 가치보존 기능 이상의 실질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로 인한 왜곡 발생 측면에서는 주식거래 행위가 과세로 인해 받는 영향보다 여타의 경제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소득의 원천설을 따르는 견해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함.
 - 금융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로 인해 과세를 받은 소득이고 가치의 보존을 위해 자본에 투자한 이득에 대한 추가적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 자본이득은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몇 년간의 투자결과를 한 시점에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됨.
 - 특히, 소득이 한 시점에 발생함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불합리성이 있음.
 - 양성적 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해 귀금속, 예술품등 음성적 자산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찬성론과 반대론의 절충론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저율로 우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한계과세론이 존재

-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
 -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
 -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

- 그러나, 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

<참고 > 일본의 자본이득세 전환 사례

□ 일본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1989년 공평·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형,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53년 폐지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활시켰음.

*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산출의 실무적 난해함으로 인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0.15%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파생상품거래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음.

- 또한, 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과세 부담을 고려하여 그동안 0.55%까지 상승하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3%까지 인하하였음.

- 특히, 도입 당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가 병합된 형태로, 주식 양도인은 양도차익의 20% 신고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의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이후, 일본은 1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만 부과하였음.
- 양도차익과세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 되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2003년부터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도 도입하였음.
 - * 양도차익과세는 1년을 초과보유한 상장주식은 20%, 1년 미만 보유 상장주식 등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2003년에는 세율이 각각 10%, 20%로 인하되었음.
-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차익과세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우나 시장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금융개혁의 일환이었던 증권거래세 폐지로, 일본의 금융시장은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세계화에 보다 적합한 모델로 변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 Shinhua Liu(2007)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음.
 - 다만, 1990년대 즉,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한 시기에는 세부담 증가, 금융시장 자유화 진행, 외환위기 등이 겹치며 국외자금유출이 심화된 점도 있음.
 - 한편, 1999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서 세 부담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음.
 -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 수준
 -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 수준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는 안정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식에 양도차손익을 통산(수평적 손익통산)할 수 있어 과세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과세기간간에도 양도차손익을 통한(수직적 손익통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비해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어려울 수 있음
 - 증권거래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영국 사례), 오히려 자본시장을 불안정하게 하여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스웨덴 사례)

-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할 필요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비과세되고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규모가 9.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소득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임.
 - * 박종상(2015), “금융자산 관련 소득과세의 현황과 시사점” 참조
 - 따라서 금융자산 관련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단계: 금융소득 개념 도입

-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
 - 금융상품 보유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이 제고
 -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는 달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
 - 상장주식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차익, 외환매매차익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가능한한 모든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과세를 포괄화하고 단순화
 -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분류를 없애고 '금융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할 수도 있고, 현행 분류는 유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금융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타당
 - *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의 분류를 없애고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우월하나,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 과세가 아닌 소득유형별 과세를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을 감안할 경우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구분을 유지하고 과세상 취급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세 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고위험자산에 높게 과세하고 저위험자산에 낮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르게 과세할 경우 고위험자산에서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조세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조세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 금융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시장효율성 제고 가능
 - 다른 투자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상품의 변경 및 설계가 쉽기 때문에 과세취급이 상이한 금융소득으로 변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유형별로 과세상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유형변경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
 - * 금융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는 새로운 '금융소득'개념하에서는 소득유형변경에 따른 조세회피 어려움

- 새로운 금융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산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필요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원칙적으로는 과세부담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해 총량적으로는 과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왜곡이 발생하는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양도차손(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서만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산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단, 투자성이 없는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투자성이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상계를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의 여지가 클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

-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최영렬(2011) 참조)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취급되는 근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종류간 수평적 과세형평 침해여지

- 또한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고액금융자산가를 저소득투자자에 비해 과세상 우대한다는 수직적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적

- 그러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을 제고
-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
- 이원적 소득세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평생소득차원에서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완화
- 또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징세를 단순화하여 국내외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한다는 장점도 존재

□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안종석·전병목(2007)에 따르면, 금융소득의 경우 14%의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의 비중은 전체 금융소득의 15.6%에 불과한 반면, 근로소득은 64.8%, 종합소득은 81.6%에 이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조세회피(tax avoidance) 방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지

를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져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가능

* 독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신고 가능

<참고> 북유럽3국 및 독일의 이원적소득세제(홍범교·이상엽(2013) 참조)

-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음.
 -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배경은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며, 국가 간 자본이동·유출이 증가하게 되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음.
 -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이 1991년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이후 노르웨이(1992), 핀란드(1993) 등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로 자리 잡았음.
 - * 도입 당시에는 임퓨테이션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세제간 세율 격차 확대,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개정이 이루어졌음.
 - 현행 기준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 및 손익통상을 허용하는 구조이며, 세율 등 구체적인 세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스웨덴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노동, 연금, 사업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자본, 임대 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통상은 없으나 자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자본, 임대소득과 개인 사업 소득 및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도 포함함.
 - 자본소득 내에서 지급이자와 자본손실은 100% 공제 가능함.
 - * 다만, 특정 경우에는 70%로 공제 한도를 제한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자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부분적 통산을 허용함.
 - * 순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자 수준이 10만 SEK 이하이면 손실액의 30%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 SEK 초과 부분은 손실액의 21%를 공제함.

- 노르웨이는 1992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제는 일반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함.
 - 일반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법인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소득세에는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가 포함되며, 일반소득의 경우 세율은 28%가 적용됨.
 - * 개인소득세율은 최대 47.8%까지 부과되며, 개인의 자본소득은 28%의 일반소득세가 부과되나 무위험 투자수익 초과분은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
 -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하고, 일반소득이 적자가 될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함.

- 핀란드는 1993년 북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함.
 - 근로소득에는 임금, 연금, 비상장기업 배당, 개인사업소득 중 근로소득 부문 등을 포함하며, 투자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 산림, 투자펀드, 저작권, 자본이득 등을 포함함.
 - 세율은 투자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 30%이며, 근로소득은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 1~2%의 교회세를 부과

- 특히 배당소득은 일정범위 내는 투자소득,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순투자소득이 적자일 경우, 적자액의 3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함.
 - * 세액 공제시에는 1400유로의 기본 한도가 있으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으로만 상계가 가능하고, 손실은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
- 한편, 독일은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른 방식을 적용함.
 - 일반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며,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0~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포함한 투자소득은 26.375%의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적용함.
 - * 소액 저축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자 중에서도 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를 적용받을 경우 신고에 의해 과세됨.
 - 또한, 법인세는 일반소득과 별도로 징수하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함.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으로만 상계가 허용되며, 이월공제도 가능함.

<표 IV-2>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국가의 세율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근로소득	국세 0~25%, 지방세 평균 31%	28~40%	국세 0~35%, 지방세 평균 18%	0~45%
금융소득	국세만 30%	28%	국세만 29%	26.375%

<참고문헌>

- 오윤 · 문성훈, 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세법학연구 21-1.
- 문성훈, 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4.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 김용민 · 박동규 · 장재형 · 변혜정, 2014, 금융 · 금융거래 · 금융세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최영렬, 2011,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90
- 이동식, 2015, 일반조세법(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 문성훈 · 이영한, 2011,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4.
- 문성훈, 2010,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6-3.
- 안종석 · 전병목, 2007.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2.
- 홍범교 · 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리 도입에 관한 연구, 2013
- 홍범교 · 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2010

<부록> 과세특례 현황

- 일반적으로 저축,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저축 증대와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86-91조에서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 * 노인 및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도 함.
 -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방법은 특정 상품에 납입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이연시키거나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저율과세 등으로 이루어짐.
 - * 가령,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에는 연말정산 시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 이연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금융자산 간 이동을 유발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실제로 저축증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또한, 특정 경우에 한하여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외의 인정, 즉 분리과세 허용도 있음.

- 즉,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있으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규모는 연간 약 9.1조원으로 추정됨³.
 -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조세지출에 해당되며, 특히, 조합 출자금

³ 박종상(2015)

및 예탁금에 대한 혜택, 생계형 저축에 대한 혜택,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4조원⁴에 이릅니다.

* 조세지출이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세금 감면을 의미함.

□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차액에 대해 비과세

□ 현재 비과세 영역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대략적으로 연평균 23.7조원 규모로 추정됨⁵.

-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서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이 비과세 영역에 속함.

<표-부록1> 금융상품 비과세 등 조세지원

상품명	대상요건	한도	세금우대 내용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제 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14년까지 발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86조의 2)	소기업·소상공 인(중소기업협 동조합법)	연간 300만원과 공제부금 납부액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에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87조)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	연간 납입금 240만원 한도	이자배당비과세/ 근로자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12까지 가입)

⁴ 홍범교 이상엽(2013)

⁵ 박종상(20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조특법 제87조의2)	농어민	연간 납입금 최고한도 144만원(저소득농어 민 120만원)	이자저축장려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17 까지 가입)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7조의 5)	거주자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9% 저율과세 ('15까지 적용)
		2억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87조의 6)	거주자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5% 저율과세 ('16까지 적용)
		2억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특법 제88조의2)	노인(65세이상),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등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19 까지 가입)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연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공제
		보유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5)	농어민 등	1명당 1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15까지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89조)	거주자	1인당 1천만원 /노인·장애인 3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9% 저율과세, 지방소득세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특법 제89조의3)	농어민 등	1명당 3천만원 이내	이자 비과세 (15까지의 소득) 5% 저율과세 (16까지의 소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91조의 6)	거주자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9% 저율과세 ('16까지 적용)
		2억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12)	재외동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신탁별로 1억원 이하	배당 비과세 (‘12까지 적용)
		1억 초과	배당 5% 저율과세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 91조의 14)	근로자 (직전연도 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직전연도 소득 3500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15까지 가입)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91조의 15)	거주자	1명당 5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15까지 가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91조의 16)	근로자 (직전연도 급여 5천만원 이하)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15까지 가입)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59조의 3)	거주자	납입액 연 400만원 이내	12% 세액공제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제12조 1호)	-	-	소득세 비과세 (수탁원본 초과 이익)

자료: 금융연(2012), 국가법령정보센터